

# 서울특별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양민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511
----------	------

발의연월일 : 2020. 5. 25.

발 의 자 : 양민규 의원(1명)

찬 성 자 : 조상호, 최기찬, 홍성룡,  
이광호, 최웅식, 김화숙,  
송명화, 김정환, 이광성,  
황인구, 정지권, 경만선,  
송재혁, 이상훈, 김제리,  
한기영, 장인홍, 박순규,  
권순선 의원(19명)

##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자체가 시민에게 공공자원을 무상대여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서울시 소유 공용차량을 서울시민과 공유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 나. 공용차량 이용대상자의 범위 및 이용신청방법, 준수사항 등을 정함(안 제3조, 제5조, 제12조).
- 다. 공용차량의 이용신청, 승인 및 통지 절차와 운전자의 자격을 정함(안 제6조, 제10조).
- 라. 이용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조치 사항 및 이의 신청 절차에 대해 정함(안 제13조, 제14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 서울특별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5조제4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용차량을 서울시민과 공유하여 이를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증진 시키고 유희 자원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정책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공용차량 공유사업”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나 토요일(이하 “공휴일등”이라 한다)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이 조례에 따라 서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이용대상자”란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휴일등에 공용차량을 자신이 직접 운전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도록 지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3조에 따른 시민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이용대상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공휴일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운전자”란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이용자를 위하여 이용자가 지정하여 공용차량을 운전하도록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이용대상자의 범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시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현재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이용자의 공용차량 이용의 범위)** 시장은 공휴일등에 공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용차량을 이용자에게 이동수단으로 제공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신청 방법)** ①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이용대상자는 시장에게 서면, 인터넷 또는 어플리케이션 신청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제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에 동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공용차량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방문 또는 팩스 전송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이용대상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2. 이용자 또는 운전자의 운전경력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기간 첫날의 15일(그날 오전 9시 이후를 말한다)전부터 1일(그날 오후 1시까지를 말한다)전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이용신청의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변경된 이용신청의 기간을 서울특별시청 게시판 등을 통해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6조(이용의 승인 등)** ① 시장은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서류를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용신청 등을 한 사람은 같은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운전면허 정보
2.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은 이용신청 등을 한 사람이 다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 수의 범위에서 선순위자에 대하여 이용을 승인하며, 탑승인원 및 목적지에 따라 배차하는 공용차량의 종류를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대상자에 대하여 그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 후에도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신청 등을 한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

1. 최근 1개월 동안 이용실적이 없는 자
2. 기초생활수급자
3. 차상위 계층

③ 시장은 이용대상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날의 전날 오후 6시까지 이용신청을 한 자에게 이용승인 여부(불승인 시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일한 이용대상자(제3조에 따른 이용대상자 1명이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같이 생활하는 다른 가족은 동일한 이용대상자로 본다)에 대하여 월 2회(공휴일등이 2일을 초과하여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 최대 5일

까지를 1회로 본다)의 범위에서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용차량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월 2회 이상 이용한 사람의 추가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⑤ 이용대상자는 이용신청 등이 있는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용신청 등의 기간 내에 이용신청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이용승인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공용차량을 이용하게 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 ①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공용차량 공유이용을 위하여 신청자·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정보 수집을 요청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부한 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공용차량 공유이용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자·운전자의 주민등록번호, 운전자의 운전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자·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주민부서, 경찰청 및 복지부서 등 사무 처리에 필요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정보 수집을 요청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

은 거부한 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이용자 및 운전자의 자격)** ①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이용자 또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이용할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2.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사람이 아닐 것
3.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일 것
4. 이용하려는 날 현재 만 26세 이상인 사람일 것
5. 최근 2년간 교통사고로 중상 이상의 인적 피해 이력이 없고 음주운전 법규위반 이력이 없는 사람일 것.

② 시장은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용 승인 후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이용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공용차량을 입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 ① 공용차량의 출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이용자 및 운전자의 신분 확인
2. 이용자의 준수사항 고지
3. 차량상태 확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작성
4. 차량 출고

② 공용차량의 입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작성
2. 이용 중 특이사항 확인 작성
3. 차량 입고

③ 무인화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는 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차량관리부서는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른 공용차량 운행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는 승인받은 이용의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입고 기한을 지켜서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입고 기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통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2. 운전을 하는 이용자나 운전자는 제10조에 따른 이용자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용자는 승인받지 않은 자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이용자는 이용자가 수행하는 영업을 위한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이용자는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 그 밖에 차량의 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6. 이용자는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알리고, 이용 종료 시 별지 제4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이용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 차량 손해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손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과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8. 이용자는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이용자 및 운전자는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향후 일정에 대한 부



담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3조(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위반 시 조치)** ① 시장은 이용자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용 정지를 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거나, 영리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 5년 이하의 이용 정지
2. 이용자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용을 정지한다.
3. 제6조제5항에 따른 취소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같은 항에 따른 취소를 3회 이상 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4. 제12조에 따른 이용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체적인 조치 사항과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정 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이용신청 등에 대한 불승인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용승인의 취소
3. 제13조에 따른 이용 정지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공용차량 공유사업 지원)** 시장은 공용차량 공유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이용자·운전자작성)

			이용자 자격명	
이용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운전자1	성 명		생년월일/성별	
	면허	구분	운전면허번호	
		유효기간		연 락 처
운전자2	성 명		생년월일/성별	
	면허	구분	운전면허번호	
		유효기간		연 락 처
내 용	이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희망차량		차량수령	월 일 시 분
	행 선 지		차량반납	월 일 시 분
	이용목적			
	탑승인원	명	특이사항	
	차량수령장소 : 서울특별시가 지정하는 수령장소			
<p>「서울특별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의 이용을 신청합니다.</p> <p>&lt;준수사항&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용차량은 만 26세 이상 보험가입 차량으로, 이용하려는 날 현재 만 26세 이상만 운전가능</li> <li>2.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li> <li>3.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대여)·운전금지</li> <li>4.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li> <li>5.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사유를 서울시에 은폐하고 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이용자 부담</li> <li>6.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li> </ol> <p>&lt;첨부서류&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용대상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2. 이용대상자 또는 운전자의 <u>운전경력증명서</u></li> </ol>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년      월      일                          신청자:                                  (서    명)                     </div> <p style="margin-top: 20px;">서울특별시장 귀하</p>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성별, 행선지, 이용자격, 이용목적	공용차량 공유 이용, 통계목적 활용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이용자 및 운전자 자격 조회	3년

※ 주민등록번호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근거하여 수집됩니다.  
※ 위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 기관	제공 항목	제공 목적	이용기간
서울시 각 자치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통일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이용자 자격 확인	3년
경찰청	성명, 운전면허번호	운전면허 종별 및 교통사고, 법규위반 여부 확인	3년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를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정보를 확인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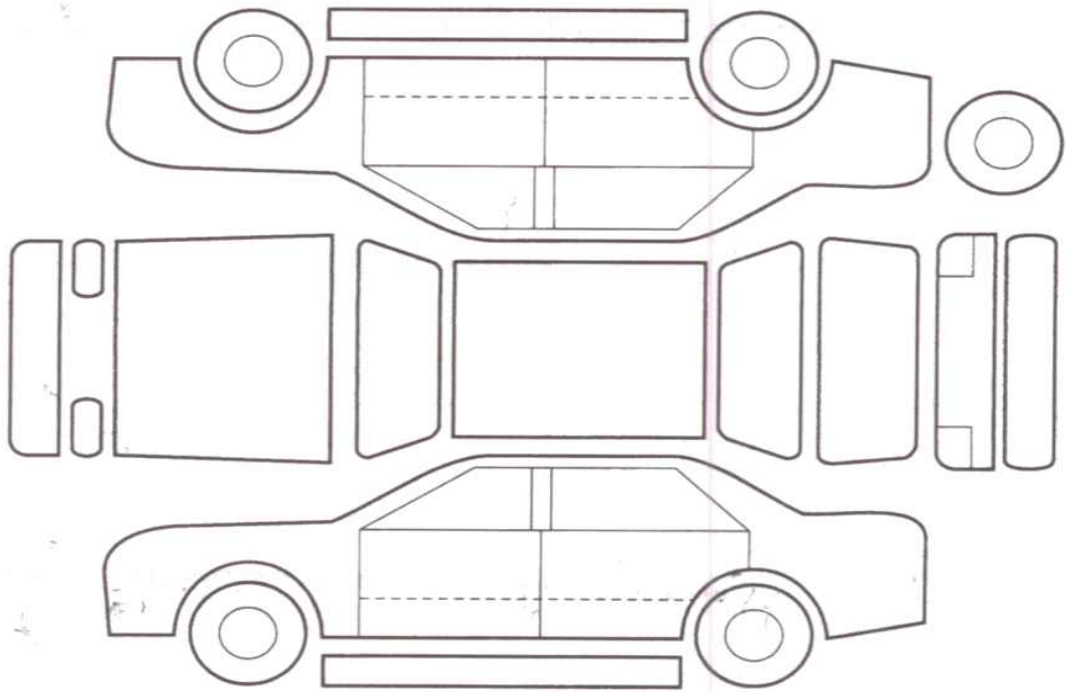
신청자 : (서 명)

운전자 : (서 명)

##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 ※ 유류게이지 및 차량 내·외부 상태 상호확인 하였음.
- ※ 공용차량에 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차량 운행 중 이상이 있을 시 이용자 책임임.

\*자동차 외관 손상부위 = V + (기호표시)



수령 확인서			반납 확인서		
차량번호			차량번호		
일시			일시		
수령자		서명 / 인	반납자		서명 / 인
생년월일			생년월일		
확인자		서명 / 인	확인자		서명 / 인

서울특별시 총무과 별관운영팀

## 공용차량 운행일지

년 월 일 (요일)

				이용자	담당자	팀장	결재
차량번호		전일누계	km	유류수불현황	전날 남은 양		L
이용자 (☎ - - )	금일운행	km	금일 급유량			L	
운전자 (☎ - - )	누계	km	금일 소비량			L	
			금일 남은 양			L	
승차자	용무	경유지 및 목적지	시간		운행거리	운행확인 (서명)	
			출발	도착			
			:	:	km		
<p>〈그 밖에 건의사항〉</p> <p>○</p> <p>○</p> <p>○</p>							
<p>〈이용자 확인사항〉</p> <p>○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p> <p>○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네비게이션 작동 여부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p> <p>○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p> <p>○ 운행 전 블랙박스 작동 여부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p> <p>○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지원담당에 통보</p>							
<p>〈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p> <p>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미 정차 시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p> <p>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p> <p>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p> <p>4. 보험회사 사고접수(○○○보험사, ☎ ○○○○-○○○○)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p> <p>5. 사고내용 보고: ☎ ○○○-○○○-○○○○</p>							

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

년 월 일

확 인	이용자	담당자	팀장

운 전 자 관 련 사 항	본 인		상 대 방	
	차량번호		차량번호	
	운 전 자 성 명		운 전 자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주 소		주 소	
	연 락 처		연 락 처	
	보 험 사 회 사 명		보 험 사 회 사 명	
	사 고 접 수 번 호		사 고 접 수 번 호	
사 고 관 련 사 항	사고일시		사고차량 사진	
	사고장소			
	사고내용			
	사 고 피 해 내 용			
	조치사항			
	차 량 수 리 공 장			
	기타사항			

확 인 자 :

(서명)